

通商産業部 外貨表示 國産機械 購入資金 1兆圓

資本財 機械工業育成政策 一大 轉換

輸入過多 · 輸入 對抗力 強化 品目別 戰略設定

정부는 만성적 대외무역 적자를 완화하고, 21세기 우리 한국의 선진형 부국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정책의 하나로 소비재생산 및 기간산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류의 자본재 산업 육성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난 95. 5. 26일 『자본재산업 육성 추진 위원회』를 민·관 합동으로 구성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95. 6. 26일 『정부 부문 추

진반』회의와 95. 6. 28일 『민간 부문 추진반』회의를 가진 데 이어, 지난 95. 6. 30일 제 2차 자본재 산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자본재산업 육성대책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 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다음은 동 통상산업부가 마련한 자본재 산업 육성대책 세부추진 계획 회의자료이다.

자본재 산업 육성 대책 세부추진계획

I. 개요

- 1995. 5. 26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자본재산업육성 추진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여 자본재 산업 육성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6월말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수요기반 확대, 생산지원 확대등 5대 추진전략 40개 과제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담당 부처별로 수립하고 95. 6. 26 제1회 『정부부문추진반』회의를 개최하여 최종협의
- 기존 40개 과제중 내용이 일부 유사한 3개 과제는 통합하고 3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계획 수립
- 민간부문에서는 95. 6. 28 제1회 『민간부문추진반』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에 대한 정책건의와 자체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I. 세부 추진계획

1. 수요기반 확대

- 가. 96년까지 국내의 금융조건 불균형 해소
- (1) 외화표시 국산기계 구입자금 규모 확대

- 통상산업부는 95. 7월중에 외화 표시 국산기계 구입자금 1조원을 집행 할 수 있도록 용자대상 범위와 조건을 확정하고 운용요령을 고시
- 용자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국산기계설비
통상산업부가 고시한 첨단 기술제품,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계획에 의거 고시·개발된 품목 및 전략 품목, 자동화 관련설비, 일관생산설비, 중소기업이 92년 이후 개발한 제품, 용자절차: 생산자 단체의 품목 확인을 거쳐 취급 은행에 용자 신청
- 용자 대상기업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하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 1순위: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 - 2순위: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대기업이 구매하는 경우, 대기업이 생산하고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 - 3순위: 대기업이 생산하고 대기업이 구매하는 경우
- (2) 외화 대출제도 개편
- 재정경제원은 국산기계 구입 및 리스용에 대해서도 96년중에 외화 대출이 허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통상산업부는 자금조성 전망, 외표자금 소진추이등을 감안하여 용자 대상품목 확대 검토
- 나. 기계류 전문 할부금융회사 설립
- 기계류 생산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기계류전문 할부금융회사를 설립하되

- 통상산업부는 취급품목, 재원조달 방법 등 기계류전담 할부금융회사 설립 기준안을 재정경제원과 협의 결정
- 96년중 영입이 가능하도록 금년 하반기에 세부 사업 계획을 확정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재정경제원의 영입 인가 추진

다. 기계류 수출지원 확대

- (1) 연불 수출자금 확대
- 재정경제원은 수출입은행의 기계류 및 산업설비에 대한 연불수출 자금을 95년 28,000억원에서 96년 35,500억원으로 확대
- (2) 대외경제협력기금 우선지원
- 재정경제원은 대외 경제협력기금 지원사업중에서 국산기계류 수출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선정 우선 지원
- 전략사업 : TDX·광케이블등 통신기계류, 송배전 시설 등 전기기계류, 의료기계류, 철도차량 등 수송 기계류, 발전설비 등

라. 우수자본재에 대한 전시회 개최 (추가 발굴과제)

- 통상산업부는 우수 자본재의 제품 인지도 제고와 판로 확대를 위하여 생산기술연구원등의 주관으로 매년 우수 자본재에 대해 포상을 실시 하고 전시회를 개최
- 금년에는 11월 개최를 목표로 기 개발된 제품을 대상으로 하되 96년부터는 전략품목 위주로 전시 추진
- 우수품질마크를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해외전시회 참가 적극 유도

마. 신제품 개발에 따른 해외업체 덤핑방지 (추가 발굴 과제)

- 국내 업체가 신제품 개발시 경쟁 해외업체에 덤핑으로 시장확보 곤란
- 현행 산업피해구제 제도는 피해구제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에게 실효성이 미약
- 국내 업체의 신제품개발시 해외 업체의 덤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반덤핑 조사기간 단축 및 절차의 간소화등 제도개선 방안 강구

2. 생산지원 확대

가. 공업발전기금 지원제도 개선

- 통상산업부는 시제품개발자금의 품목당 지원한도 확대 (5억원→20억원) 와 지원대상 확대 (중소기업 → 대기업)를 위하여 95. 7월중 기금운용관리 요령 및 규정 개정, 95년 공업발전기금 중 300억원을 전략품목 개발에 추가지원하고, 96년에는 시제품 개발자금 규모를 2,000억원으로 확대 지원

- 전략품목 개발을 위하여 95년 총 750억원 지원

- 개발된 시제품에 대한 『수요창출지원방안』수립

나. 전략품목 개발

- 통상산업부는 품목의 특성과 개발시급성의 정도에 따라 수입과다 품목, 수입대항력 강화품목등으로 구분하여 전략품목을 선정

- 수입과다 품목 : 연 수입액이 3,000만불을 초과하는 품목, 수입대항력 강화품목 : 향후 수입선 다변화 해제를 대비하여 품질, 성능개선이 필요한 품목, 수출 전략품목 : 단기간의 육성으로 수출산업화가 가능한 품목

- 수요확대 예상품목 : 선진국에서 개발을 추진중에 있어 향후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품목, 『新엔고』 10대 유망업종의 품목

- 품목 발굴은 자동차등 특정수요 대기업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추진하되

- 기업 담당관과 품목 담당관을 지정하여 개발대상 품목을 발굴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함.

- 금년 하반기 개발대상은 7월 까지 발굴·고시하고 8월말까지 지원대상업체 확정

- 96년 지원대상품목은 95년말까지 발굴·고시하되 상반기 지원대상과 하반기 지원대상을 구분하여 고시

- 품목개발은 자체개발, 국제공동개발, 기술도입, 해외 기술인력 활용, 합작투자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추진토록 유도, 효율적인 개발체제 확립을 위해 생산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 공업기술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본재기술개발관리단』을 설치하여 개발과제 발굴에서 사후 평가까지 전문 연구원이 전담하여 관리

다. 신기술 창업기업 금융지원 강화

- 재정경제원은 신기술사업 금융회사에서 대출심사시 국산개발업체에 대한 『기술성』의 배점비를 상향조정

(15점→20점) 을 위하여 『투자용자취급요강』을 개정

- 95.6.1부터 실시토록 조치

라. 기술개발준비금 적립한도 상향조정

○ 재정경제원은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한도를 매출액의 3%에서 5%로 상향조정하고, 기술인력·개발비의 세액 공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 위하여

- 95. 12월까지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조항 (제8조 및 제121조)을 개정

마. 표준화기획단 설치

○ 공업진흥청은 자본재의 표준화를 위하여 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산·학·연·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자본재표준화기획단』 설치

- 산하에 표준기획반, 규격개발반, 규격보급반을 운영

○ 95. 6. 7일 제1차 기획단 회의를 개최하여 『자본재표준화 추진대책』 확정,

- 95년 18건 등 2000년까지 총 518건의 표준규격을 제정·보급하고, 소요예산은 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으로 총당(96~2000년간 총 125억원 예상), 96년은 50개 과제에 대한 표준화 추진(96예산 확보 추진중)

○ 표준화제품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표준규격품에 대하여 96년부터 지원되는 외화대출 용자대상에 포함

3. 품질보증업무 강화

가. 품질인증센터 설치

(1) 품질인증센터 설치

○ 공업기술원은 수요가 많은 자동화설비에 대한 품질인증을 우선실시하기 위하여 96년부터 『자동화설비시험센터』 건립을 추진

- 건립비 (50억원 예상)와 품질인증에 필요한 시험평가설비 구입비는 예산에서 확보 추진

○ 자본재의 품질인증을 위한 요령을 확정, 95. 7.1 부터 시행

- 95년은 400개 품목, 96년 이후는 매년 800개 품목씩 해외 자본재와 비교 평가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품질향상 계획을 수립, 사업에 필요한 인력(55명 예상)과 96예산 확보 추진중

○ 공업기술원의 품질인증사업성과를 보아 단계적으로 생

산기술연구원등 전문연구기관으로 확대

(2) 인증소요비용의 해외시장개척기금 지원

○ 통상산업부는 95년 하반기중 공업기술원으로부터 해외 인증에 필요한 해외시장 개척기금 신청규모를 검토하여 96년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

- 96. 1월 무역협회의 기금관리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정

(3) 우수품질마크 부여

○ 공업기술원은 품질평가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우수 품질마크로 EM(Excellent Machine, Material, Mechanism)마크 부여,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협조를 얻어 도안을 완료하고 특허청에 상표 출원중. 자동스크린 날염기등 품질인증 신청이 예상되는 94개 품목에 대한 평가기준(안) 작성을 완료하고

- 95. 7. 1부터 업체의 신청을 받아 우수품질마크를 부여

나. 우수품질마크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1)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확대

○ 재정경제원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규정』을 개정

- 95. 6. 1부터 실시토록 조치

(2)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보증기금 간이심사

○ 재정경제원은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간이심사 보증지원 강화를 위하여 『기술우대보증취급요령』을 개정 (95. 7. 1 부터 실시 예정)

(3) 창업투자회사 투자시 창업지원기금 용자

○ 통상산업부는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용자규모(현행 60억원)를 확대 하여 우수품질마크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토록 95. 7월중 『95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기금우선지원을 위하여 95. 8월 중 『창업지원기금 관리·운용 요령』개정, 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우수품질마크제품 생산기업에 투자를 확대토록 지도, 『창업지원기금지원기준』에 반영하여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용자실시

○ 우수품질 마크 부여 추이등을 보아 96년 지원규모 확대다. 우수품질마크 품목에 대한 하자보증 제도 실시. 통상산업부는 기계공업진흥회 주관으로 우수품질마크 품목에 대한 하자보증사업을 실시하도록 96년 사업기금을 조성하되

- 우수품질마크 품목 생산기업의 하자보증신청시 기금 출연을 의무화하고 주요기업의 자율적 출연을 유도하여 기금의 50%를 민간자본으로 조성
- 하자보증기금 관리를 위해 기계공업진흥회내 기계공제 조합에서 품질인증품목 하자 보증 운용요령등 운영절차와 요령을 7월까지 제정하고 하반기중 담당기구를 설치하여 96년부터 하자보증사업을 실시토록 추진

4. 기술·인력 및 정보지원

가. 공고·전문대·공과대학 정원 지속 확대

- 교육부는 전체 고교생 중 공고생 비율을 95년 14.6%에서 2000년 22%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96~2000년간 24,311억원을 투자하여 48개 공고 신설, 209개 학급 증설 등 추진, 95년 이후 전문대학 정원중 공업계 정원 비율을 50%로 유지하고 공업계 정원을 95년 108,000명에서 98년에는 133,000명으로 확대, 95년 공과대학 정원을 대학교 정원의 56.6% 까지 제고하고 (94년 56%) 97년부터는 지방 사립대학부터 정원을 자율화하되 공업계 인력의 적정 양성이 가능토록 유도

나. 기능대학 등 다기능 기술자 과정에 전문대 학력 인정

- (1) 학력인정
 - 노동부는 다기능 기술자 과정의 고급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기존의 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 개편
 - (95) 12개 대학 → (96) 16개 대학
 - 기능대학 다기능기술자과정 졸업자에 대한 전문대 학력 인정을 위해 95. 12월까지 기능대학법 개정 추진, 통상산업부는 생산기술연구원 부설 기술교육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등의 2년제 기술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산업기술대학 편입자격 부여 추진
- (2) 단기직업훈련과정 연수대상 인원 확대
 - 노동부는 주·단조, 금형, 열처리, 용접등 수요가 많은 단기직업 훈련과정의 연수대상 인원 확대를 위하여 산업인력 종합수급 대책에 따른 구체적인 양성계획을 95년 10월말까지 마련하고 96년부터 실시

다. 설계부문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 (1) 핵심엔지니어링 기술개발
 - 과학기술처는 제11회 종합과학기술심의회 (95.4.25)에

서 결정된 『핵심엔지니어링 기술진흥 중장기계획』에 의거 핵심공정 및 공법 기술등 6개 중점 기술개발사업 추진

- 엔지니어링기술을 2005년까지 선진 7개국권 수준으로 제고

- 엔고에 대응한 대형기계설비 국산화를 위하여 95년부터 중점과제를 도출하여 기술개발 추진, 통상산업부는 과거 처와 협의, 설계 엔지니어링회사 육성방안 수립

(2) 설계인력 양성

- 교육부는 기업체 연구인력의 재교육을 통한 설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존대학원 내에 1년의 단기 설계인력 양성과정 (비학위 과정) 설치 허용
 - 장기적으로 전문설계대학원 설립등 자본재 설계인력 양성방안 수립
- 공대 교육과정중 설계 관련 실습기간을 확대하고 학부, 석사과정 학생의 현장실습 강화, 통상산업부는 대학별 설계기술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산업체 인력의 설계교육 및 최신 정보수집 배포
 - 우선적으로 서울대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에 산업 기술기반조성자금을 지원하여 인력양성 (96예산 확보 추진중), 경기도 시화공단에 설립을 추진중인 산업 기술대학 내에 설계 인력 양성 과정 설치

라. 노후 교육기자재 국산대체를 위한 재정지원

- 교육부는 96~ 2000년간 약 500억원을 투자하여 국립공고와 국립대학의 노후기자재를 국산으로 대체하고
 - 실업계 고교, 사립전문대학 및 사립대학의 노후기자재는 재정지원 능력을 감안하여 국산으로 대체 추진
- 노동부는 산하 직업훈련기관의 노후·부족장비 14,297점 중 수명이 5~10년 이상이 경과된 7,900점을 국산으로 대체하고
 - 나머지 장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국산대체 및 구입 추진

- 공단내 기업체의 유희장비를 교육·훈련기관에 기증하는 방안 강구, 리스자금 활용방안 강구

마. 기술지도단 구성 및 현장지도 강화

-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국내외 퇴역기술자로 구성된 『원로전문가 지도단』(가칭)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핵심 애로기술의 현장지도 실시

- 95년중 퇴직전문가 300명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인원확대, 95. 9월까지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6년부터 지도단 운영
- 설계·생산기술분야는 물론 경영관리분야까지 장기계약 지도를 실시하되 필요시 기업에 취업 연계
- 바. 외국의 유능한 기술자 유치
 - 통상산업부는 외국의 유능한 기술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 금년 6월까지 외국인의 체류시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하반기중 『우수 외국인력 유치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 시행토록 추진
 - 유치가 필요한 우수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화교등과 유사한 체류자격 신설을 검토하고,
 - ° 『특별신분증』을 발급하여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 의료보험 가입등에 있어 내국인과 동등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추진
- 사. 중소기업 연구인력의 확보지원 강화
 - 통상산업부는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설연구소의 연구인력을 중소기업 종업원수 산정 기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95.7.1부터 시행, 재정경제원은 96년 상반기중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개정
- 아.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세 경감
 - 재정경제원은 자본재생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근무연한에 따라 소득세에서 일정비율의 금액을 비과세
 - 3년 ~ 7년 미만 : 월정급여의 10%를 비과세, 7년 ~ 12년 미만 : 월정급여의 20%를 비과세, 12년이상 : 월정급여의 30%를 비과세
 - 이를 위하여 95. 12월까지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추진
- 자.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제도 확대
 - 통상산업부는 병무청과 협조,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확대를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을 산업기능요원으로 대폭 전환하고, 병역특례업체 신규지정 확대,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95. 7월말까지 제도개선을 확정하고 95. 10월중 96년
- 도 병역특례업체 신규지정
 - 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의 자본재산업에 대한 배정비율 제고를 위하여 96년내 『병역특례업체 신규지정을 위한 추천기준』개정
- 차. 자본재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 통상산업부는 1차적으로 96년 창원공단에 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소요자금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업단지 관리공단과 협의중
 - 여타 공단과 대도시 지역은 창원공단의 종합지원센터에서 지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되 지방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와 연계
- 카. 자동화 전문인력 양성(추가발굴과제)
 - 통상산업부는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품질향상과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스스로 생산설비를 자동화 할수 있도록 자동화 전문인력 양성 공급을 추진, 이를 위해 전문대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력을 대상으로 6개월 실무과정으로 집중교육 실시
 - 96년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에 세부계획 수립 추진

5. 외국인 투자의 적극유치

- 가. 지자체의 외국인 기업유치시 정부지원 확대
 - (1) 미분양공단에 대한 분양가 차액지원
 - 현재 외국인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미분양공단을 조성원가보다 낮게 분양하는 지자체가 없어 예산지원을 할수 없는 실정이나, 향후 지자체가 분양가를 인하할 경우 통상산업부는 재정경제원과 협의, 낮게 분양한 차액의 50%(신규조성은 30%)를 예산에 반영
 - (2) 미분양공단 임대시 지원
 - 향후 지자체가 공단을 임대할 경우도 통상산업부는 재정경제원과 협의, 부지매입가의 50%(신규조성시 30%)를 지원
- 나. 광주 평동 외국인 전용공단의 입주조건 개선
 - 통상산업부는 광주 평동 외국인전용공단 분양가를 조성원가 33만원 보다 저렴한 28만 6천원으로 인하하고 (95.6.16.) 임대료도 당초 예상 임대가격(연간 3,500원/

평)의 45.3%인 연간 1,587원/평으로 임대계약일로부터 5년간 적용기로 결정(95.5.30)

다. 수입선 다변화제도의 예외 인정

- 통상산업부는 금년 하반기중 『수입선 다변화 운용요령』을 개정하여 외국인 전용공단 입주업체에 대해 수입선 다변화 품목(기자재·부품)의 예외 수입을 허용

라. 우수외국인력 체류상한기간 연장

- 법무부는 우수 외국인력의 체류상한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입국후 체류할 수 있는 최장기간을 18년으로 연장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96. 1부터 시행

마. 대일투자유치 사절단 활동 강화

(1) 업종별 대일투자 유치단 파견

- 통상산업부는 기계, 전자·정보, 자동차부품의 3개 업종별로 47개 참여업체를 확정하여 세부 파견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95. 7. 10~7.15간 『95 한국 민·관 합동유치단』을 동경과 오사카에서 파견하여 유치활동 전개

(2) 일본의 대한투자 조사단 유치

- 일본의 대한 투자 조사단 파견방침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간 합의가 완료되었으나, 파견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양국간 실무협의중
 - 한국(통상산업부)은 95. 11월 민·관 합동으로 기계, 전자·정보,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조사단 파견희망
 - 일본은 11월은 APEC정상회담 관계로 곤란하므로 상호협의하여 추진하자는 의견

(3) 동경 한국부품산업 종합전시회 개최

- 통상산업부는 엔고를 활용한 대일수출 확대를 위하여 일본 동경 『MIPRO 국제 전시장』에서 95.11.14~11.17간 한국 부품산업 종합전시회를 개최 추진

- 전시장 규모 : 2,500㎡ (전시면적 1,500㎡)

- 참가업체 : 80개사 내외 (예정)

- 이를 위하여 집중적인 대업체 홍보를 통해 관련업체의 전시회 참여 유도 및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95. 6~7: 업체 유치활동 및 참가업체 선정, 95. 8~9: 전시장 설계 확정 및 시공업체 선정, 95. 10: 전시품 수집, 발송

Ⅲ. 향후 조치사항

- 금번 세부추진계획에서 사업계획, 예산지원액등이 확정되지 않은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히 확정하여 차기 『자본재산업육성추진위원회』회의시 이를 보고토록 하고

- 사업추진 내용과 일정이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음, 『민간부문 추진반』에서 정책건의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반영토록 하고, 민간부문 자체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음.

〈참고〉 자본재산업 5대 추진전략 및 세부추진과제별 소관부서

코드번호	추진전략	소관부서(협조)
I	수요기반확대	산업정책국장
가.	국내외금융조건 불균형 해소	
(1)	- 외화표시국산기계구입자금 규모 확대	산업정책과(산업기계과)
(2)	- 외화대출제도 개편(외화 대출 용자대상품목 선정·고시)	산업정책과(산업기계과)
나.	기계류전문 할부금융회사 설립	산업기계과
다.	기계류 수출지원확대	무역정책과
라.	우수자본재에 대한 전시회 개최	산업기계과

코드번호	추진 전략	소관부서(업종)
Ⅱ	생산지원 확대	기초공업국장
가.	공업발전기금 지원제도 개선	산업정책과(산업기계과)
나.	전략핵심품목 개발	산업기계과(각 공업과)
다.	기술개발준비금 적립한도 상향조정 등	재경원(산업기계과)
라.	표준화 기획단 설치	공진청(산업기계과)
Ⅲ	품질보증업무 강화	기초공업국장
가.	품질인증센터 설치	공업기술원(산업기계과)
나.	- 우수품질마크 제품의 생산기업 특별지원	
(1)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확대	재정경제원
다.	우수품질마크 품목 하자 보증제도 실시	산업기계과
Ⅳ	기술·인력 및 정보지원	산업정책국장
가.	공고·전문대·공과대학 정원지속 확대	교육부(산업기술기획과)
나.	기능대학등(다기능기술자과정)전문대학력 인정	노동부
다.	- 설계부문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1)	- 핵심엔지니어링 기술개발(특정연구개발)	과기처(산업기술 개발과)
(2)	실제인력 양성	산업기계과 (기술기획과)
라.	노후교육기자재 국산대체를 위한 재정지원	교육부·노동부 (산업기계·기술기획과)
마.	기술지도단 구성 및 현장지도 강화	진흥과
바.	외국의 유능한 기술자 유치	국제기업과(법무부)
사.	중소기업 연구인력의 확보지원 강화	중소기업 정책과
아.	현장기술인력 소득세 경감	재경원(중소기업 정책과)
자.	병역특례 산업기능 요원제도 확대	지도과
차.	자본재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산업기계과
카.	자동화 전문인력 양성	중소기업진흥과
Ⅴ	외국인투자의 적극 유치	통상무역 2심의관
가.	지자체의 외국인기업 유치시 정부지원 확대	산업배치과
나.	광주평동 외국인 전용공단의 입주조건 개선	산업배치과
다.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예외 인정	수입과(각 공업과)
라.	우수의국인력 체류상한기간 연장	법무부(국제기업과)
마.	대일투자 유치 사절단 활동 강화	각 공업과